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제 출 자	여상훈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Ⅰ. 경과

[회의 일시 · 장소]

소위원회 제22차 회의

일시 : 2012. 8. 13. (월) 11:30~14:40

장소 : 가연

[참석위원]

여상훈(위원장), 이건리, 이상원, 이태섭, 임성근(위원은 가나다순으로 표시)

[진행방식]

○ 심의대상을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 건으로 정함

○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단의 논의 결과 도출된 쟁점에 관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단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소위원회에서 각 쟁점별로 심의 · 진행

[심의대상]

구분	주무전문위원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	함석천, 최형표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보완)	최형표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수정본)	함석천, 최형표
●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선거범죄군	심재철, 조석영

○ 대상범죄별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Ⅱ.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검토

1. 소위원회 논의결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가.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기본영역에 벌금형을 포함시킬지 여부

○ 양형기준안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제1유형 내지 제5유형 전부에 관하여 기본영역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징역형만 포함되어 있는바, 위 각 소유형의 기본영역에 벌금형도 추가하여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뉨

[제1안]

다수 의견(여상훈, 이건리, 이상원, 임성근) : 현행안 유지

-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은 금권선거의 대표적 사례로 엄정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는데, 기본영역에 벌금형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반함
- 감경영역에서는 벌금형 선고 가능하므로 법정형에 벌금형 포함된 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니며, 실제 양형통계 역시 징역형 선고의 비율이 더 높은 점 감안해야 함

[제2안]

소수 의견(이태섭) : 제1, 2유형의 기본영역에 벌금형 포함

-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본영역에서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것은 법 규정에 반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선택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기부행위의 경우 벌금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중 경미한 유형에 관하여는 기본영역에 벌금형이 포함되어야 함
- 적어도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중 제1유형인 '당내경선 관련 매수', 제2유형인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에 대하여는 기본영역에 벌금형 기준이 포함되어야 함

나.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의 감경영역 하한을 벌금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출 것인지 여부

○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중 제3유형인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에 있어서 감경영역의 벌금형 하한을 원안인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시킬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뉨

[제1안]

다수 의견(여상훈, 이상원, 이태섭, 임성근) : 150만 원으로 하향

- 감경영역 벌금형 하한을 200만 원으로 유지할 경우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더 많아 특별조정을 거치더라도 당선무효가 되어, 유사한 사안에서 기부행위로 기소되는 경우와의 형평성이 문제됨

[제2안]

소수 의견(이건리) : 200만 원 유지

- 후보자 본인에 의한 매수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2. 소위원회 논의결과 의견이 일치된 부분

가.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중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권고형량범위를 “일반 매수” 수준으로 상향할 것인지 여부 : 현행안 유지

○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경우 본 선거에서의 ‘일반 매수’에 비하여 법정형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형 차이를 존중하여 ‘당내경선 관련 매수’를 ‘일반 매수’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나.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단순히 “경미한 경우”로 수정할 것인지 여부 : 현행안 유지

○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하여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

익이 “다액”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한 이상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있었음

○ 이에 관하여, 위 특별감경인자의 내용은 전문위원단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타 감경인자와의 중복적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위 특별감경인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다. “기부행위와 선거일의 간격이 매우 커서 사실상 특정 선거와 관련성 내지 선거운동의 목적과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추가할지 여부 : 현행안 유지

○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점, 선거일과의 간격이 큰 경우는 관례적·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요소로 추가하지 아니하고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삭제 여부 : 현행안 유지하되 양형인자 중복적용 배제 문구 추가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의 양형인자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사이,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의 양형인자 중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사이에는 양형인자가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단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양형인자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견 모음

○ 이에 대한 소위원회 논의결과,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도 대부분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라는 인자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다만, 앞서 언급된 양형인자들과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와 앞서 언급된 양형인자들을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부기하기로 의견이 일치됨

마.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에 있어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추가

○ 선거범죄 중 다른 유형에는 모두 위 인자가 특별감경인자로 존재하는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만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에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

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중복적용에 의한 이중평가의 문제 : 현행안 유지

○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양형인자를 별도로 두어 가중처벌을 하는 경우 이중평가의 위험이 생길 수는 있으나, 사기범죄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중인자를 두고 있는 점, 실제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양형을 하면 되는 점에 비추어 현행 양형기준안을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

사.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에 있어서 선거 후의 처벌불원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시킬지 여부 : 일반감경인자로 추가

○ 선거 후 처벌불원은 유권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후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시정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선거 전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나, 형법상 감경사유인 "범행후의 정황"을 양형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은 개인적 법익 침해의 측면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점, 선거 후 정치적 결단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진 상황을 참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 후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하는 데 의견이 일치

아.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예시 추가 여부 : 추가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받아들여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특별감경인자 중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예시로 "토론회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정도의 해명이 이루어진 경우"를 추가하는 데 의견이 일치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 관련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제외사유 규정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 정치자금법위반 범죄 등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고하는 죄와 분리 선고하는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데 의견이 일치